



제 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기관 확대
및 요청자료 명확화 등〉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60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농어업경영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기관 확대 및 요청자료 명 확화(안 제5조제1항)	4
2. 등록정보의 수정·보완 사항이 필요한 경우 직권조치 강화(안 제6조제1항)	9
3. 등록정보의 조사·확인 결과와 다를 경우 직권조치 확대(안 제6조의2제1항)	12
4. 농어업경영정보의 제공 근거 마련(안 제7조제2항~제4항 신설)	17
5.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과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8조)	24
IV. 입법의 재정영향	29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2. 18.

다. 회 부 일 : 2025.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직권 조치를 강화하며 말소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금 지원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포함되어 있는 농어업인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들이 일일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외에도 법원행정

처장, 생산자 단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및 위탁받은 자를 추가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자료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나. 농어업인들이 직접 방문, 전화 등을 통해 변경 정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연계된 관련 정보로 확인하고,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함(안 제6조제1항).

다. 직권조치 강화 및 사망·거주불명시 확실적 말소에 따른 농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를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로 하고,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조사·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로 확대하며, 경영주가 사망하거나 거주불명일 때 경영주 외의 농어업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정보를 말소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6조의2제1항).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농어업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 제공 요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마. 지자체장 등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체 보조사업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자금 지원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자금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함(안 제
8조).

Ⅲ. 검토의견

1. 농어업경영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기관 확대 및 요청
자료 명확화(안 제5조제1항)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경영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을 포함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로 명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 ----- ----- ----- ----- ----- -----법원행정처장, <u>지방자치단체의 장,</u> ----- -----공공 기관의 장,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법령 또는 조례에 따 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 임 및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양행정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 전산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5조제1항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만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기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료는 농어업인이 직접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¹⁾하고 있어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현행 조문은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등록정보 확인을 위해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에 그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1) 가령 경영주 농업인이 배우자를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가족관계 정보는 현행법상 자료 요청 대상이 아닌 법원행정처 소관이므로, 농업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함.

이에 개정안은 자료제출 요청 대상을 기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서 법원행정처장, 생산자단체 및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제출 요청 자료를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개인정보 수집·처리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연계 가능한 행정정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농어업인이 직접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처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을 강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제 전반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 전산정보 등의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등’이라는 표현이 자료 요청 범위를 확장하거나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남용될 소지가 있음.

특히, 농어업경영체가 실제 농어업을 영위하는지 확인에 필요한 ‘소득 및 매출액 정보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재산권에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인 점을 고려할 때,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료 제출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할 소지를 두는 것보다 필요한 정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8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둘째, 안 제5조는 ‘농업 경영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추가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가 ‘농어업 경영정보’의 효율적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의 확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업 경영정보’ 확인을 위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도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등록정보의 수정·보완 사항이 필요한 경우 직권조치 강화(안 제6조제1항)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면 농어업경영체에 수정등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6조제1항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u>요청하여야 한다</u> .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① - ----- ----- ----- ----- ----- <u>요청할 수 있다</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6조제1항은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등록정보 확인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수정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2²⁾는 경영주가 사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하거나 거주불명 등의 경우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등록정보를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등록정보 수정 보완 요청’ 및 ‘등록정보 직권 말소’의 권한은 동법 제29조³⁾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실무가 수행되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 두 조문 간의 절차적 상충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가.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주불명인 경우

다.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라.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마. 「농지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해당 농지 관련 정보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가.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나. 농지·임야·축사 및 어장·양식시설의 소재지

다.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라.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

마.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별표 1의 임야 관련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장관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2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보완 요청

3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3의3.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심사·결정 및 결과의 통보

4.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법 제6조제1항의 ‘의무적 수정 요청’ 규정으로 인해 경영주의 사망이나 주소 이전과 같이 공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 사안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획일적인 수정 요청 절차를 거쳐야만 함.

이 과정에서 농어업인이 직접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만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강제됨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6조제1항에서 강행규정으로 규율하고 있는 “요청하여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현행화를 통해 농어업인의 서류 제출 및 응답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3. 등록정보의 조사·확인 결과와 다를 경우 직권조치 확대(안 제6조의2제1항)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사망하거나 거주불명인 경우 현행법 제6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등록정보를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정보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한편,

기존에 주소·재배품목 등 5가지 항목에만 국한되었던 정정 또는 말소 대상을 “등록정보가 조사·확인 결과와 다를 경우”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세부 열거 조항(가~마목)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u>정정</u>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 ----- ----- ----- <u>직권으로 정정</u>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나. ----- ----- -----

현행	개정안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주불명인 <u>경우</u>	----- ----- <u>경우(다만,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u>
다. ~ 마. (생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u>	6. <u>등록정보가</u> ----- ----- <u>결과와 다를 경우</u>
<u>가.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u>	<u><삭 제></u>
<u>나. 농지·임야·축사 및 어장·양식시설의 소재지</u>	<u><삭 제></u>
<u>다.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u>	<u><삭 제></u>
<u>라.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u>	<u><삭 제></u>
<u>마.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u>	<u><삭 제></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6조의2제1항제2호나목은 경영주인 농어업인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인 경우 등록정보를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는 조사·확인 결과 등록정보에 대한 직권 정정 또는 말소가 가능한 범위를 주소, 소재지, 재배 품목 등 5가지 항목(가~마목)으로 국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제 영농을 함께해 온 배우자나 자녀 등 경영 구성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주의 부재만으로 경영체 전체가 일괄 말소됨에 따라 보조금 수급 및 세제 혜택이 단절되는 등 농업 경영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6조의2제1항제6호 가~마목 이외에 공적 자료를 통해 등록 정보의 명백한 오류를 확인하더라도, 법령에 명시된 5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이 이를 즉시 바로잡을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경영주 사망 또는 거주불명 시의 말소 사유를 경영주 외의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정보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경영체의 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기존의 세부 열거 조항(가~마목)을 삭제하고 정정 대상을 “등록정보가 조사·확인 결과와 다를 경우” 전반으로 확대하여 사실에 기반한 포괄적 정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러한 개정안은 경영주 사망 시에도 실질적인 영농을 지속하는 가족 경영체의 법적 지위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공적 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확인된 모든 객관적 불일치 사항을 즉각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농정 데이터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정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한 결과와 다를 경우 행정청이 직권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말소’ 또는 ‘정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단순한 기재 오류나 경미한 정보 불일치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경영체 등록 자체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과잉 처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물론, 행정기본법 제10조⁵⁾에서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일반적 원칙인 점과,

농어업경영체 등록의 ‘말소’는 보조금 수급권 박탈 등 농어업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침익적 처분인 점을 고려할 때,

개별법에서도 처분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치행정을 실현하는 데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정정’ 또는 ‘말소’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단순한 기재 오류나 경미한 정보 불일치 사안은 ‘정정’으로, 농어업 경영체 등록 요

5)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건의 상실과 같은 본질적 사항의 불일치 시에만 ‘말소’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 농어업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농어업경영정보의 제공 근거 마련(안 제7조제2항~제4항 신설)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정보의 제공 사유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정보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 근거, 요청하는 정보의 내용 및 활용 목적, 안전관리 대책 등을 기재한 문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그</u>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① -- ----- ----- ----- <u>그</u> ----- ----- ----- -----.
<신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농어업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농어업 경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요청 근거, 요청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내용 및 활용 목적, 안전관리 대책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현행법 제7조는 농어업경영정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6)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음.

6)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그러나, 이는 주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국한된 예외 규정으로, 현행법상 행정기관 간 정보를 체계적·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농어업·농어촌 관련 용자 및 보조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정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방침」 등 내부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임.

이는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행정행위가 법률이 아닌 내부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청’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정보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 근거와 안전관리 대책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요청하도록 하는 등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정비 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정보 제공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은 다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공익직불금,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등 정책자금의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수급 자격의 실질적 요건(실제 영농 여부 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필요는 인정됨.

그러나, 안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⁷⁾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경우’라면 농어업경영정보를 항상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중 ‘생산자단체’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영농조합법인, 자조금단체 등의 민간 조직⁸⁾으로, 정확한 실태 파

7) 안 제5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생산자단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및 위탁받은 자”의 약칭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8호)**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악이 어려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을 제외하더라도, 그 수가 1,649개에 달하고 있음.

【 생산자단체 현황 】

구 분		개소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u>조합 및 그 중앙회</u>	1,111
	○ 「산림조합법」에 따른 <u>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u>	143
	○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u>업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u>	1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농식품부 고시)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u>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u>	173*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u>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u>	26*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u>조합공동사업법인</u> ○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u>품목조합연합회</u> ○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u>조합공동사업법인</u>	140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u>자조금단체</u>	31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u>축산단체</u>	9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u>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u>	확인 불가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u>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u>	
합계		1,649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17,956개소) 중 출자금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출자금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을 추출한 현황

** 재정경제부 소관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업종이 농업·어업·임업은 2,027개소), 사회적협동조합(206개소), 협동조합연합회(업종이 농업·어업·임업은 4개소)이며, 이 중 농산물을 생산·판매·가공·수출을 위해 농업인 5명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조합·연합회의 현황은 확인이 어렵다는 농식품부 의견 제출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따라서, 이와 같이 많은 수의 민간 조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다는 명목만으로 농어업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농어업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어업경영정보를 제공받는 주체인 안 제7조제2항제1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사 입법례의 경우에도 정보 등의 제공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사 입법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u>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u>(「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u>할 수 있다.</u>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u>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u>정보를 제공받아 처리</u>(「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8까지에서 같다)<u>할 수 있다.</u> (이하 생략)

5.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과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8조)

개정안은 현행법 제8조에 따른 자금지원 등의 제한의 주체를 현행법 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안 제5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9)”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① <u>중앙행정기관의 장</u> 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①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u> ----- ----- -----.
② <u>중앙행정기관의 장</u> 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u> ----- ----- ----- ----- -----.
1.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2. (현행과 같음)
3.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u>중앙행정기관의 장</u> 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업경영체	3. ----- ----- ----- <u>관</u> <u>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u> ----- ----- -----

현행법 제8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어업 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시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자금 지원 제한의 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실제로 농어업·농어촌 관련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정보 미등록 등을 근거로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첫째, 자금 지원 제한 주체(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범위 설정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생산자단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및 위탁받은 자”의 약칭

농어업·농어촌 관련 용자 및 보조금의 지원 주체는 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인데, 개정안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는 안 제5조제1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및 민간 위탁기관과 같은 민간 성격의 주체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공적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법적 처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조금단체나 영농조합법인 등의 생산자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성격의 각종 지원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되는바,

이는 사적 자금의 집행을 국가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통제함으로써 민간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지원의 제한 대상을 명확히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공 자금(용자·보조금)’으로 한정하고, 그 주체를 공적 기관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지원의 실질적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둘째, 안 제8조제2항제3호와 현행법 제7조의2 사이의 주어 불일치 및 법적 정합성 문제가 있음.

현행법 제7조의2제1항제2호¹⁰⁾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용도 외 사용이나 양도 등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음.

또한, 동법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부기등기 말소 관련 보조금 반환 사실 확인 및 기간 설정 권한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부여되고 있음.

따라서, 안 제8조제2항제3호¹¹⁾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용도 외 사용이나 양도의 승인 주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할 경우 현행법 제7조의2에 따른 실제 권한의 주체와 불일치 되는 모순이 발생함.

1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부기등기 등) ①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33조 및 제3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360호 이원택대표발의)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3.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업경영체

따라서, 안 제8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제8조의 수정과 병행하여 현행법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 각 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²⁾.

12)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